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0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이만희·구자근·서천호

김기웅 · 엄태영 · 강선영

서지영 • 조은희 • 권영진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%를, 그 후 2년 동안은 50%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2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9 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의22(첨단의료복합단지	제121조의22(첨단의료복합단지
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	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
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	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업(이하 이 장에서	
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	
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	
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	
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	
1.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	1
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	
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	<u>2</u>
<u>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입주한	<u>029년 12월 31일</u>
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	
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	
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사업	
2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2조	2
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	
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입주한	<u>2029년 12월 31일</u>
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	
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	
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
사업 -----② ~ ⑨ (생 략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